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 회)	

신항만건설촉진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강도형 (해양수산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4 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경쟁입찰 방식을 통한 사업자 지정 절차 도입 등 「신항만건설 촉진법」이 개정(‘24.7.24.시행 예정)됨에 따라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하위 법령 일부 개정을 추진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사업자 지정에 있어 경쟁입찰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 사업계획 공고 절차 도입 및 공고 대상 사업 조건 명시(안 제9조의2)
- 신속한 평가 절차 이행 및 공고 추진 여부 결정 등을 위해 사업계획 제출 시 타당성 조사 결과를 포함하도록 근거 마련(안 제9조)
 - 업무 연속성, 효율화를 고려하여 상기 업무에 대해 지방해양수산청장에 위임 규정 마련(안 제36조)
- 나. 신속한 항만시설 확충을 위해 유사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신항만건설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조건 확대(안 제6조의2)
- 다. 개정 법률에 맞춰 토지보상 업무 위탁에 관련된 시행령 위임조항 문구 정비(안 제35조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쟁점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2제1항제1호 중 “당초”를 “축소하거나 당초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항만기본계획, 항만재개발기본계획, 산업단지개발계획,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등을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
7. 「국가재정법」 제5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당성재조사 결과,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, 「해상교통안전법」 제13조제5항에 따른 검토의견 등을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
8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
 - 가. 공유수면 매립면적이 증가하지 않는 항만시설의 위치 변경
 - 나. 항만시설 규모의 변경이 없는 항만시설 명칭의 변경
 - 다. 계류시설 규모의 변경이 없는 계류시설 접안 능력의 증대
 - 라. 돌핀(선박을 매어두거나 접안시키는 말뚝 등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법선(法線: 계류시설에서 선박이 접안하는 면의 상부 끝단을 연장한 선) 범위 내에서의 해당 돌핀의 시설 변경
 - 마.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

제9조제1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

설하며,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“법 제7조제3항”을 “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경쟁입찰 방식으로 지정신청인을 평가하거나 법 제7조제4항”으로 한다.

11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시행한 타당성조사 결과(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)

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2(경쟁입찰 방식에 의한 우선순위자 선정 등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작성에 관한 사항을 공고 할 수 있다. 이 경우 공고 대상 신항만건설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.

1. 「항만법」 제47조의 절차에 따라 추진하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
2.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이 경제성 등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업
3. 법 제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공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법 제7조제1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 해당하는 자가 사업계획을 승인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경쟁입찰 방식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공고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

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5조(토지매수업무등의 위탁과 위탁수수료) 사업시행자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매수업무·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사업등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, 위탁수수료 등에 관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3조를 준용한다.

제36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의2를 제2호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2.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경쟁입찰 방식의 사업계획·지정신청인의 평가 및 우선순위자 선정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의2(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) ① 법 제4조의2제3항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	제6조의2(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신항만건설지역 또는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의 면적을 당초 계획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	1. ----- ----- <u>축소</u> <u>하거나 당초</u> ----- -----
2. ~ 5. (생략)	2. ~ 5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6. <u>항만기본계획, 항만재개발기본계획, 산업단지개발계획,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등을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</u>
<u><신 설></u>	7. 「국가재정법」 제5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결과,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, 「해상교통안전법」 제13조제5항에 따른 검토의견 등을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
<u><신 설></u>	8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

②・③ (생 략) 제9조(사업시행자의 지정) ①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신항만건설 사업의 시행자(이하 “사업시행 자”라 한다)로 지정받으려는 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	가. <u>공유수면 매립면적이 증 가하지 않는 항만시설의 위치 변경</u> 나. <u>항만시설 규모의 변경이 없는 항만시설 명칭의 변 경</u> 다. <u>계류시설 규모의 변경이 없는 계류시설 접안 능력 의 증대</u> 라. <u>돌핀(선박을 매어두거나 접안시키는 말뚝 등을 말 한다. 이하 같다)의 법선 (法線: 계류시설에서 선박 이 접안하는 면의 상부 끝 단을 연장한 선) 범위 내에 서의 해당 돌핀의 시설 변 경</u> 마. <u>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 정에 준하는 경미한 사항 의 변경</u> ②・③ (현행과 같음) 제9조(사업시행자의 지정) ①--- ----- ----- ----- -----
---	---

신항만건설에 관한 사업계획(이하 “사업계획”이라 한다)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1. ~ 10. (생략)

<신설>

11. (생략)

② (생략)

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계획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

-----.

-----.

1. ~ 10. (현행과 같음)

11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시행한 타당성조사 결과(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)

12. (현행 제11호와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③-----

-----.
----- 법 제7조 제3항에 따른 경쟁입찰 방식으로 지정신청인을 평가하거나 법 제7조제4항-----

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신항만건설 관련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기관에 그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.

④ ~ ⑥ (생략)

<신 설>

-----.

④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9조의2(경쟁입찰 방식에 의한 우선순위자 선정 등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작성에 관한 사항을 공고 할 수 있다. 이 경우 공고 대상 신항만건설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.

1. 「항만법」 제47조의 절차에 따라 추진하는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
2.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이 경제성 등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업
3. 법 제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하여 해양

제35조(토지매수업무등의 위탁과 위탁수수료) ①사업시행자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매수업무·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사업등을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위탁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매수업무·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사업등을 위탁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위탁수수료의 요율은

수산부장관이 공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법 제7조제1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 해당하는 자가 사업계획을 승인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경쟁입찰 방식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공고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

제35조(토지매수업무등의 위탁과 위탁수수료) 사업시행자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매수업무·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사업등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, 위탁수수료 등에 관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3조를 준용한다.

<u>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에 의한다.</u> 제36조(권한의 위임)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. 1. (생략) <u><신설></u> <u>1의2. ~ 5.</u> (생략)	제36조(권한의 위임) -----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<u>1의2.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경쟁입찰 방식의 사업계획·지정신청인의 평가 및 우선순위자 선정</u> <u>2. ~ 6.</u> (현행 제1호의2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)
-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	
연 락 처	(044) 200 - 5941